

2019년도 제19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9. 24.(화요일), 11: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위원, 임진모 위원, 전용준 위원(분과위원장)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9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정현순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910건(안건번호 제 2019-117041호~120773호)
 - 회의결과 : 안건번호 제2019-117041호~117048호는 저작권법 제133조의3 신설 전과 후에 올린 단편소설 복제물의 시정권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부의하고 나머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99회 저작권보호 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9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시정권고 회의록에 대해서는 5쪽의 밴드명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A 위원 : 전문위원 의견에 따라 밴드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같은 생각임
- 정현순 전문위원 : 정보제공청구 회의록에 대해 현재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고 있음
최근 청구인이 정보제공청구 건 부결 사유에 대해 문의한 사안과 관련하여 회의록 공개여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아울러 공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에 대해서도 결정이 필요함
정보제공청구 제도는 미국의 서피나(subpoena)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문서제출명령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사법 절차의 일환임

우리나라도 이를 법원에서 담당했다면 사법절차로 이뤄졌을 것이고 재판기록에 준해서 관리되었을 것임

법원에서도 판결문은 공개되지만 변론기록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정보제공청구 회의록에 권리 및 사실관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부는 비식별처리하고, 일부는 공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청구인이 부결사유에 대해 확인을 원한다면 문체부를 통해 문의해서 답변을 듣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정보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임

정보제공청구 제도가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교법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도 외국에서 시행하는 것에 준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힘

- A 위원 : 정현순 전문위원과 같은 견해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처분성이 있는 행위라고 생각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최종 단계에서 공개하는 것이고 중간단계의 심의 기록 등은 공개하지 않음

회의록이 공개되면 청구인은 불이익이 없지만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인 계정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비식별 처리해야 될 것임

- 정현순 전문위원 : 회의록에 계약 관계나 계약 사항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권리자가 제3자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를 모두 제거한다면 회의록을 공개하는 실익이 거의 없을 것임

- B 위원 : 시정권고 제도와 정보제공청구 제도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지만 두 제도의 성격은 전혀 다른 것이어서 전문위원 의견에 따라 정보제공청구 회의록은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청구인이 부결사유에 대해 문의를 하면 문체부가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부결사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임
그래도 답변이 미진하다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도록 해야 할 것임
- B 위원 : 전문위원 의견처럼 한다면 청구인도 권리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할 것임
그렇지 않다면 소명이 부족한 자료를 제출하여 정보제공을 청구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될 수 있음
- A 위원 : 정보제공청구하여 가결된 계정에 대해 문체부에서 명령 시 OSP에서 청구인에게 어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지 질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저작권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제공함
- A 위원 : 문체부에서는 소 제기 용도로 정보제공을 명령하는 것임
소제기에 합의, 협상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자우편주소나 전화번호는 소제기 하는데 필요가 없음
전자우편주소나 전화번호를 제공하면 청구인은 합의금 요청을 위해 이 정보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됨

- C 위원 :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의견에 동의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시정권고 회의록의 밴드명은 비식별처리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되 정보제공청구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정현순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117041호~120773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4,910건임
안전번호 제2019-117041호~117044호는 시정권고 제도의 시행일 전에 업로드된 단편소설 복제물로,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것이 시정권고 제도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 제2019-117045호~117048호는 국어 사교육 카페에서 단편소설을 전송한 것으로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으로 보이므로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출판 ‘오발탄’ 관련 조사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17041호는 네이버 카페 ‘○○○○○’ 카페매니저가 ‘한국의 명단편소설’ 게시판에 이범선의 오발탄을 첨부파일로 제공함
- A 위원 : 카페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 게시물 내용에 '한 쪽 분량 정도로 쓰시기 바랍니다'고 되어있어서 과제를 내준 것으로 보임
- 정현순 전문위원 : (네이버 카페의 다른 게시물을 보여주며) '■■■■'이 게시물을 다수 올리고 있음
- A 위원 : 게시자가 최근에 카페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전체 게시글의 화면을 요청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카페의 전체 게시된 글의 게시판을 보여주며) 2019. 9. 9. '한국의 명단편소설 황순원 - 별'을 게시하였음
- C 위원 : 과제를 내도록 하는 것으로 보면 게시글 작성자가 교사로 추정됨
- B 위원 :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내면서 책도 첨부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 정현순 전문위원 : '무단 복사 근절에 대한 공지'도 있으나 공개되지 않아 게시글 내용확인 어려움
- A 위원 : 네이버 카페 '◇◇◇◇'는 기출문제를 제공하는 카페인지 질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기출문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됨

- A 위원 : 해당 카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정현순 전문위원 : 게시글 내용에 '전문이에요 저작권문제있음말씀해주세요 지울게요ㅋㅋㅋ'라고 기재하고 있음
해당 게시물은 2007년 10월 6일 게시하였음
- A 위원 : '지울게요'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정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정현순 전문위원 : (다음 카페에 게시된 '오발탄'의 채증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17044호는 다음카페에 전문이 게시되어 있음
- A 위원 : 카페지기가 '부재중'으로 되어있음
- 정현순 전문위원 :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B 위원 : 검토보고서 19쪽 각주 9번을 보면 제2분과위원회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로 의결했는데 9월 9일 제3분과위원회에서는 부결로 의결했음
7월 23일 회의에서 계속범과 즉시범을 이야기했고 일주일 뒤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제2019-199회 검토보고서에는 해당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계속범, 즉시범으로만 나눌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상태범도 있음
대법원 판결에서도 상태범과 계속범에 대한 논란이 많음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한 행위를 즉시범이 아닌 상태범으로 보면

범죄 완료 이후 위법상태가 계속 진행 중이므로 소급적용이 아님

- C 위원 : 상태범과 계속범의 차이에 대해 질의함
- B 위원 : 범죄의 완료시기가 다름
계속범은 범죄가 계속되는 것이어서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조범이나 공범의 성립범위가 달라짐
- A 위원 : 범죄행위의 시간 순서에 따라 구분하면 미수, 기수, 완료로 나눌 수 있음
미수는 실행이 착수된 것이고 기수는 범죄가 종료된 것이며 완료는 뒤에 있는 것임
상태범은 기수와 완료에 있음
- C 위원 : 즉시범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질의함
- B 위원 : 즉시범이 아니라고 보는 것임
- 정현순 전문위원 : 검토보고서상의 전문위원 의견은 보호원이 불법복제물을 모니터링할 때 지나치게 오래 전에 게시된 게시물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임
- B 위원 :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불법복제물이 많은데 시급하지 않은 것도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생각됨
- 정현순 전문위원 : 한정된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음

- A 위원 : 네이버와 다음의 카페, 블로그를 모니터링하면 게시한 지 오래된 불법복제물이 존재함
- 정현순 전문위원 : 게시한 지 오래된 것을 채증하는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모니터링 방식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음
- A 위원 : 네이버, 다음에서 '오발탄'의 전문을 공개한 것은 잘못된 행위임
웹하드에서 영화, 게임을 판매하는 행위와 카페, 블로그에 게시한 것은 성격이 다름
- C 위원 : 저작권보호원의 설립 취지가 저작권 침해가 이뤄지는 가능성도 주시하는 건데 행정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시정권고 할 필요가 있음
게시한 사람은 상태범이라고 생각함
- B 위원 : 법 신설 전에 게시한 것은 부결하고, 법 신설 후에 게시한 것은 가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 C 위원 :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 A 위원 :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는 기출문제를 제공하는 카페로 단편소설 '오발탄'이 법 신설

전에 올린 것이 있고 법 신설 후에 올린 것이 있는데 법 신설 전후에 따라 가결, 부결로 의결하기는 어려움

오래되었지만 기출문제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게시된 것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함

네이버 카페 이용자인 '■■■■■'이 올린 불법복제 게시물도 많으므로 해당 게시물도 시정권고할 필요가 있음

나머지 2건은 개인블로그에 10년 전에 올린 게시물이며, 또 다른 카페는 회원수가 37명인데 카페지기도 부재중으로 운영되지 않아 부결하는 의견을 제시함

- B 위원 : 전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A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오발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질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전체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면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보고 전체위원회에 동일한 안건으로 상정함
- C 위원 : 업로더가 오랫동안 불법복제물을 올렸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임
- B 위원 : C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불법복제물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가결하고 추후에는 불법복제물을 올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 타당함

불법복제한 것이 명백한데 부결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A 위원 : 순번 3번과 4번은 존재가 미미한 카페라서 가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17041호~117048호는 저작권법 제133조의3 신설 전과 후에 올린 단편소설 복제물의 시정권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정현순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17049호~120773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음악, 컴퓨터프로그램, 게임, 만화, 출판물, 영상물 등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 A 위원 : 데드카피이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같은 생각임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17049호~12077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19-117041호~117048호는 저작권법 제133조의3 신설 전과 후에 올린 단편소설 복제물의 시정권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 위원회에 부의하고 안전번호 제2019-117049호~120773호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전용준 분과위원장이 제19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9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0. 1.

분과위원장 전용준

위원 박성호

위원 임진모